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59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 박지혜・이소영・박정현

위성곤 • 이건태 • 이용우

김성환 · 서영교 · 염태영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또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대규모 부지확보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발전부지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서 다루게 함(안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다.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정의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신설 및 제28조의2 신설).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서 공 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 너지발전지구의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등을 명시함(안 제 28조의4부터 제28조의6까지 신설).
- 마.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 바.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안 제28조의12 신설).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5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생에너지발전지구"란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계획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2(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한 발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 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발전지 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제28조의15에 따른 전담기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지정·고시된 후해당 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도로 · 철도 · 교량 · 유하 · 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 (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의 설정
-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掘鑿) · 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8조의3(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요건) 재생에너지발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2.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 3.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회피할 것

- 4.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 5.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28조의4(재생에너지발전지구 접속설비 건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송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접속설비의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의5(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의6제1항 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에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 우
- 3. 사업시행자가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천재지변 등 기타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목적을 명백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의6(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사업시행자) 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4.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의7(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실시계획의 개요
 - 2. 현황 및 여건(재생에너지 자원, 지역경제, 환경 등)
 - 3. 기본구상

- 4. 총괄 사업계획
- 5. 세부 사업계획(사업 설계, 공사, 운영, 해체, 설비개선 등)
- 6. 사업단계별 생물다양성 영향 회피 및 상쇄 방안
- 7. 지역경제 기여 방안
- 8.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 9. 사업추진 방식
- 10. 투자계획
- 11. 기대효과
- ③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8(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 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 승인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9(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 28조의7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

- ·동의·해제·심의·등록·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

- 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 8.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1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17.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 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2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2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 고
- 2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2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28조의10(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28조의8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8조의11(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실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28조의12(발전사업부지의 처분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발전사업부지"라

한다)을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부지를 분양·임대·양도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부지의 처분 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13(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발 전지구 내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 행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8조의9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 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의14(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재생에너지발 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8조의15(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제1항 중"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사업시행 자로 지정받은 자
- 3. 제28조의14제1호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 1.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
- 2.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 3.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재생에너지발전지구"란 재
	<u>생에너지발전시설을 집단적으</u>
	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
	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	②
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u>계획</u>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5조의2(지역계획의 수립) ①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u>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u>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생 략)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3. (생 략) <신 설>

4. · 5. (생략)

③ (생략)

<신 설>

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3. (현행과 같음)
 3의2.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 관 한 중요사항
- 4. 5.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제28조의2(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 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여야 한 다. 지정한 발전지구를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생 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생에 너지발전지구를 지정 또는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 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 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제28조의

15에 따른 전담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 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 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지정·고시된 후 해당 사업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

 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또는 변경 및 어업권의 설정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掘鑿)·매립, 그 밖의 토지의형질변경

개축

-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따라지정된발전지구의원활한기능발휘를위하여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 제28조의3(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요건) 재생에너지발전지구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2.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 3.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회 <u>피할 것</u>
 - 4.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 5.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있을 것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8조의4(재생에너지발전지구 접속설비 건설)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 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지 구에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 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 ② 송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

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 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의5(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지정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 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그 지정된 날부터 5
 년 이내에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
 - 3. 사업시행자가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재생에너지발전 지구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천재지변 등 기타 중요한 사 정 변경으로 재생에너지발전 지구의 목적을 명백히 달성하 기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발 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 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 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③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용도 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의6(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사업시행자) ① 재생에너지발 전지구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 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4.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의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여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의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7(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 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 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실시계획의 개요
- 2. 현황 및 여건(재생에너지 자원, 지역경제, 환경 등)
- <u>3. 기본구상</u>
- 4. 총괄 사업계획
- 5. 세부 사업계획(사업 설계,

<u>공사, 운영, 해체, 설비개선</u> 등)

- 6. 사업단계별 생물다양성 영향 회피 및 상쇄 방안
- 7. 지역경제 기여 방안
- 8.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 9. 사업추진 방식
- 10. 투자계획
- 11. 기대효과
- ③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8(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 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 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 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 계획을 승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 고,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

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한다.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실시계획승인의방법,절차,그 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8조의9(다른 법률에 따른 인

<신 설>

• 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 행자가 제28조의7에 따라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 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 •해제·심의·등록·처분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 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 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행위의 허가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 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 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8.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의 승인
-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 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 10.「사방사업법」 제14조에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 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1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17.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 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 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 의 사용・수익허가
-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2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2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2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27. 「소음・진동관리법」 제8

 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10(토지수용) ① 사업시 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 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28조의8제5항에 따른 실 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 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 설>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제28조의11(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실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8조의12(발전사업부지의 처분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재 생에너지발전지구 내 개발사업 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이하 "발전사업부지"라 한다) 을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발전사업부지를 분양· 임대·양도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 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부지의 처분 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3(준공인가) ① 사업시 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재생 에너지발전지구 내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8

조의9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 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 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14(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 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 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 <u>방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u> 받은 경우
-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재생 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8조의15(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 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발전지 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4조(벌칙) ① (생 략)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u>알면서 공급인증서</u> 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u> 령령</u>	으로	정호	<u>한다.</u>				
제	32조	(권한	의	위임	· 우	탁)	1	
			<u>,</u>	시 •	도지	사에	게-	
				-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 를 발급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3. 제28조의14제1호의 행위를

③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 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략)

한 사업시행자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 1.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 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 대한 자
- 2.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 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 3.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 ④ (현행과 같음)